

##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한』 공정위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국내 경쟁의 확보”가 “기업 자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실증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하버드대의 Michael Porter 교수 등에 의하면 국내 경쟁수준이 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1인당 GDP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경쟁정책은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에 광범위하고도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내·외에서 경쟁주창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였다. 2002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이 경쟁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기업활동이 시장에 의해 규율되는 성숙한 시장경제의 구축이 기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장, 기업, 소비자 등 정책대상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별 수요와 필요에 맞는 고객맞춤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지난해 업무성과

먼저 경쟁정책 부문에서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성과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교복 카르텔 시정 및 교복 공동구매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유지행위를 시정하여 카드수수료율 평균 2~3%p 인하를 유도한 바 있다. 또한, 항공사 단체운임 담합, 시멘트 등 총 43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2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 각 부문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여·야, 재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괄규제에서 행태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요정보고시의 적용을 확대하여 건강식품 등 11개 업종을 추가하고 소비자신문고, 일괄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하였다.

### II. 올해 주요 업무계획

#### 1. 시장특성별 경쟁촉진정책

먼저 금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이 미흡한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여가산업,

교육 등 6개 부문을 새로 선정하여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사기간중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둘째, 카르텔에 대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카르텔을 조장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형성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후생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심사를 강화하고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정보통신 등 네트워크산업에 있어서 필수설비 접근거부, IT분야에서 기술표준 독점화 기도 등 경쟁제한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된 연예, 스포츠, 여행, 유선방송 분야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며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가 소비자후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강 등 민영화 이후 경쟁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도시가스, 지방공기업 등 지역독점성이 강하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기업·소비자 등 민간부문 모두가 경쟁법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역동적인 경쟁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지난해 7월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권고하였고 현재 대한상의의 주도아래 한국통신 등 11개 업체가 도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포상제, 제재수준 경감제도 등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 2. 기업형태와 규모별 성격에 맞는 대기업·중소기업정책

대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지난해 마련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출자·채무보증 등 행태별로 차등화된 새로운 규제방식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 직권조사보다 시장감시에 의한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자산총액기준 현행 3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지주회사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영세기업의 경쟁기반 확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 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20만 영세가맹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25,000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어음할인료 등으로 484억원을 28,000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조치하였고 올해는 30,000

개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경쟁문화 확산의 지지세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3.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

소비자 스스로 자기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첫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상품권 발행·판매분야, 소비자안전 관련사항 등 분야별 중요 정보고시를 추가 제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실증제의 적용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디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시정한다는 목표하에 금년에는 금융분야의 부대경비 부담문제, 전기·가스 등 독점적 기초생활 서비스 분야, 자동차구입계약 등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소비자 그룹별로 특성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소비자층을 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농어민, 학생 등 6개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및 교육강화, 표준약관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넷째, 최근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사업형태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권익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의 보완 또는 별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법 운용체제 확립

첫째,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법의 적용을 강화한다. 지난해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 카르텔 조사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경쟁법 역외적용에 대비해 호주·미국·EU·일본 등 외국과의 양자 협력협정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둘째, 작년말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입체적 대응체계를 마련·운영할 예정이다. WTO 협상에 앞서 국제논의의 의제와 내용을 선도하는 OECD 세계경쟁포럼(GFC),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ICN 운영위원에 선출된바 있다.

셋째, 초국경적 성격의 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개선 노력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지방공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2001. 8. 6~9. 19)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향후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에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에 지적된 사례와 같은 행위를 자진시정도록 조치하고, 지방공공부문에까지 공정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함께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밝혔다.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단을 설립하여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한 사례 개선

인천시 남구청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후, 종전에 민간업체가 수행하여 오던 굴착도로복구공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공단이 독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사업 분야에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배제하였다.

**[개선]** 인천시남구청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제1항(사업)을 개정하여 공단의 사업내용 중 민간영역과 중복 되는 굴착도로복구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삭제를 추진(조례개정안 제출 2002. 1. 18.)

### 2.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영업시간 제한 폐지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제한(13:00 ~18:00까지 영업금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장 대기시간을 연장시켜 농수산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

**[개선]** 구리시의 「구리도매시장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2002. 1. 10.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고함으로써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되었음(조례는 현재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영업시간 제한 근거규정도 폐지할 예정)

### 3.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활어취급·소매행위 금지 개선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거래질서 위반 및 소매행위자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도매시장내 활어거래 및 일체의 소매행위를 금지하여 왔으며, 중도매인에게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활어·패류 등 기포기(수족관)를 사용하는 어종의 취급을 금지하고, 또한 법령·조례 등에서는 청과·수산부류 등 부류 별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산부류 중에서 건어물만 취급하도록 하는 등 품목별로 허가함으로써 취급품목을 과도하게 규제하였다.

**[개선]**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활어를 취급할 수 있게 하거나 소매행위를 허용하는 문제는 그 인

근에 위치한 소매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종합시장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4. 조례·규칙상의 불공정 조항 개선

서울시는 공원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의 시설물을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면서 「도시공원조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간임대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키는 한편, 공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이외에는 잔여기간의 선납임대료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원시설을 임차한 영세상인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줌

**[개선]** 서울시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원내 놀이시설 등의 운영중단으로 겪게될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간임대료 선납제도를 분기별 임대료 납부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선]**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사례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나, 향후 이를 보다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정정광고 명령의 활성화

공정위는 부당광고가 소비자에게 초래한 잘못된 상품 이미지 등 소비자 오인성과 기만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정광고 명령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정광고 명령은 “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 근거하여 광고표현의 부당성 정도, 광고비용 및 광고 횟수, 광고기간, 광고의 지역적 확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표에 의거하여 71점 이상인 광고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71점 이상인 부당광고가 거의 없

는 실정이고, 정정메시지 문안이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사실상 동일하여 사업자 제재적 성격이 강해 단순히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도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정광고명령 부과대상을 확대, 부과대상 선정 기준의 요소를 가중한 접수가 51점인 경우 정정광고를 명하도록 하향조정하였고, 정정광고 부과기준상 점수가 높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하여는 완화된 문안을 적용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동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02.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2002.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공정위는 2002년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월 2 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2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4개사가 계열체외되어 2002년 2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2년 1월 2일 607개사에서 605개사로 2개사 감소하였다.

### 2002.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2002. 1. 2.	편 입				제 외					증감	2002. 2.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전체	607	8	3	1	12	8	5	1	-	-	14	△2
1~4대	188	4	1	-	5	1	-	-	-	-	1	4
5~30대	419	4	2	1	7	7	5	1	-	-	13	△6
												413

### 2002. 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편입 : 12개사(회사설립:8, 주식취득:3, 기타: 1)
- 제외 : 14개사(합병:8, 지분매각:5, 청산종결: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삼성	한더화학(주)	반도체현상액(TMAH) 제조 및 판매	주식취득	-	-	-
코오롱	코오롱 티티에이(주)	섬유제조 판매업	회사설립	-	-	-
	코오롱 환경서비스(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위탁업	"			
	코오롱웨이스트 매니지먼트(주)	"	"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하나로 통신	드림라인(주)	전기통신업	주식취득	-	-	-
	드림엑스닷넷(주)	종합소매업 (드림라인 자회사)	주식취득			
동양 학학	(주)디씨페로	요업제품의 제조	회사설립	-	-	-
고합	(주)케이피케미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	-	-
엘지	엘지엔시스(주)	금융기기, 컴퓨터 서버 개발 및 판매	회사설립	-	-	-
	(주)엘지 수퍼센터	종합소매업	"			
	(주)엘지엠알오	부동산임대	"			
	(주)곤지암레저	골프장업	"			
한솔	-	-	-	(주)한트라	상품종합중개업	지분매각
두산	-	-	-	두산테크팩(주)	유리제품 제조	(주)두산에 피합병
				아이케이 엔터프라이즈(주)	의류도매	
				아이케이 디벨롭먼트(주)	부동산임대업	
쌍용	-	-	-	오주개발(주)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쌍용양회공업 (주)에 피합병
제일 제당	-	-	-	드림라인(주)	전기통신업	지분매각
				드림엑스닷넷(주)	종합소매업	지분매각(드림라 인의 자회사)
금호	-	-	-	금호고무화학(주)	화학제품제조업	금호개발(주)에 피합병
				금호 엔지니어링(주)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	지분매각
에스 케이	-	-	-	(주)신세기통신	전기통신업	에스케이텔레콤 (주)에 피합병
영풍	-	-	-	영풍 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지분매각